

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·방법·대상사업 등(제4조의2 관련)

1. 타당성평가의 기준

사업의 종류		평가기준
공통사항		가.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지이거나 산지와 연접한 토지일 것 나.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거나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다. 멸종위기 동·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
산지 사방 사업	산사태 예방사업	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
	산사태 복구사업	가.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일 것 나. 붕괴·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일 것
	산지 보전사업	황폐지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황폐지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,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지의 붕괴·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지역일 것
	산지 복원사업	○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의 건강·활력 및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
해안 사방 사업	해안 방재림 조성사업	가. 해일·풍랑·모래날림·염분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지역으로서,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나. 만조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일 것
	해안침식 방지사업	파도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해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,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해안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
야계 사방 사업	계류 보전사업	계류(溪流) 바닥 또는 기슭에 침식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,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
	계류 복원사업	계류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훼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지역으로서,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계류의 훼손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, 계류 생태의 건강·활력과 안정성의 증진이 가

		능한 지역일 것
	사방댐 설치사업	상류지역의 산사태·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,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사태·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

2. 타당성평가의 시기·방법

- 가. 평가시기: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 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평가한다.
- 나. 평가자: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이 평가한다.
- 다. 평가방법: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,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여야 한다.

3. 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

타당성평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.

- 가.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
- 나.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

- 1) 산사태예방사업
- 2) 산사태복구사업
- 3) 산지보전사업
- 4) 산지복원사업
- 5) 해안방재림조성사업

다.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

- 1) 해안침식방지사업
- 2) 계류보전사업
- 3) 계류복원사업

4. 기타

그 밖에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